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2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김문수・주철현・정동영

김기표・조 국・강준현

이광희 • 박범계 • 민형배

최민희 · 백승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 학력 부진, 교육 복지 대상, 이주 배경 가정, 학교 및 가 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을 호소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이 사업별·정책별로 산 발적·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사업별로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이 중 시되며, 조기 발굴과 예방보다는 사후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나아가 통합적 관점에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중복 지원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유관기관 간 형식적인 협력체계, 학생 정보의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의 어려움, 지원의 단절, 학부모의 미협조 시 지원 곤란 등의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분절된 학생 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플랫폼 체제로 개편 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위기 정후를 관찰하고 도움 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며, 사업 간 연계와 전문 인력 간 협 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내 민관 연 계를 제도화 및 활성화하여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 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시

-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라.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교육 감은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맞춰제공·관리할 수 있음(안 제13조).
- 아.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법률 제 호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 •진로·상담 등의 지원
 -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2. "지원대상학생"이란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 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4. "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 제5조(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조직 · 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시·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와의 연계·협력
 - 6.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 ·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 2.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 3. 제8조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 4.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방안
 -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시·도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통합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 2.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 평가의 지원
 - 3.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 4.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 · 연구 및 정책 분석 · 평가
 - 5. 학생맞춤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6. 제15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개발 보급
 - 7.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① 교육감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학생맞춤통합 지원 업무 수행, 관련지원센터의 총괄·관리 및 지원센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 청에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 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는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지정할 수 있고 지역지원센터의 명칭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 또는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 통합지원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간 격차 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공표의 범위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 방법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학생맞춤형통합지원

-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① 학생, 부모 등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교직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시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에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 및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해 교육감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13 조 및 제14조에 따른 학생별 지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정 기준·절차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선정여부를 학교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학생 본인, 부모 등 보호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제

- 2항에 따른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의 지원대상학생 선정 기준·절차, 제12조에 따른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심의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기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전담기구를 원활하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학생맞춤통 합지원위원회(이하 "교내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내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직을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교육복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 2. 학생 상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위원회
 - 3.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내 협의회
 - 4.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위

원회

- ③ 교내지원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교내지원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교내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심의자료의 관리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수 있다.
 -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 3.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 5. 「진로교육법」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 6.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 관리 관련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 ·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내지원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후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진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학생별 지원·관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원대상학생의 복합적 특성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공 계획 수립
-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학습지원 등의 연계·제공
- 3. 지원대상학생의 변화 및 성장 정도에 대한 지속적 확인 및 관찰 •관리
- ② 교육감은 시·도지원센터, 지역지원센터, 기관·단체 등을 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기관에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렁으로 정한다.
- 제15조(연수)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맞춤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

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사, 변호사 등 지역사회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 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의 학업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 2.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재취학, 재입학, 진

학 등 지원 및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원

-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에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업복귀 지원 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9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지원대상학생 발굴,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4.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 보시스템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한 이력 정보
- 2. 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보유한 정보
- 5. 제1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 6.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집 연계 가공한 정보

- 7.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공유하는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 9.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③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또는 둘 이상의 교육감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 으며, 이 경우 해당 정보기관 및 단체는 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연계 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⑦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는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제 14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기관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 및 권한 지정, 보유기간, 개인정보 취급 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학생 및 학교 밖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학생등"이라 한다)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지원대상학생 등에 대한 기존 지원 정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다른 시·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학교의 장(국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

- 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교육감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관할 구역 내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받은 정보를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율적인 실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수 있다.
- ⑤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생맞춤통합지 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지원대상학생등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 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기학생의 정보
- 2.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5장 보칙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